



MATER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Tungsten Titanium Alloy	
기타 식별 수단		
SDS 번호	G02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산업 용도 : 같은 또는 산업 현장에서 준비에 물질의 용도	
사용상의 제한	소비자가 사용 개인 세대 (= 일반 = 소비자)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Materion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주소	Borsigstrasse 10 Alzenau 63755 독일	
이메일	Materion.Germany@materion.com	
담당자	Hermann Schmiing	
긴급전화번호	49.60.23.91.82.0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	G02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2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경고

o 유해·위험 문구

고체 형태로 판매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쇄, 용융, 절단 또는 기타 분진이나 흙의 방출을 유발하는 공정이 포함 된 경우 유해한 수준의 공기 중 미립자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H319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64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대응

P305 + P351 + P338

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

P337 + P313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저장

접촉 금지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

폐기

지역 해당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폐기물과 잔유물을 폐기할 것.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알려지지 않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팅스텐		7440-33-7	KE-35000	85 - 95
티타늄		7440-32-6	KE-33881	5 - 15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15분 이상 동안 많은 양의 물로 눈을 씻을 것. 용이하다면 콘택트 렌즈를 뺄 것. 계속해서 씻어 낼 것.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십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다량의 물을 마실 것.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일반적인 지원 방식을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증상은 지연되어서 나타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구역. 심한 눈 자극. 증상으로 통렬감, 눈물, 충혈, 팽윤 및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기침. 알려지지 않음.
-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건조 모래, 염화 나트륨 분말, 흑연 분말 또는 Met-L-X 분말.
부적절한 소화제
물. 이산화탄소(CO2).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이 제품은 불연성 물질임.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예방조치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여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모든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정화할 것.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팅 것. 질석, 마른 모래나 흙에 흡수시켜서 용기에 담을 것.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소량 누출: 흡착재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덮어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옆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눈에 접촉을 피할 것.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적절히 환기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팅스텐 (CAS 7440-33-7)	STEL - 단기노출기준	10 mg/m3
	TWA	5 mg/m3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팅스텐 (CAS 7440-33-7)	TWA	3 mg/m3	호흡성 분율.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환기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o 손 보호

필요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o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위생대책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고체.

형태 고체.

색 회색 .

나. 냄새 없음.

다. 냄새 역치 해당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2000 - 2500 °C (3632 - 4532 °F) 추정됨

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4000 °C (7232 °F) 추정됨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아. 증발 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해당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해당없음.

燃燒範圍 - 上限 (%) 온도 해당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해당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온도 해당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해당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온도 해당없음.

카. 증기압 0.00001 hPa 추정됨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불용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해당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수거하여 재생하거나 밀봉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지역에서 폐기할 것.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A. UN number Not applicable.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Not applicable.
Subsidiary risk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E. Environmental hazards No.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IMDG

- A. UN number Not applicable.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Not applicable.
Subsidiary risk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E. Environmental hazards
Marine pollutant No.
EmS Not applicable.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팅스텐 (CAS 7440-33-7)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팅스텐 (CAS 7440-33-7)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팅스텐 (CAS 7440-33-7)

노출기준설정물질

팅스텐 (CAS 7440-33-7)

나.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관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등재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한국.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별표 2 및 3, 2005년 12월 28일)

한국. OEL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 고시 제1986-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까지의 개정본, 2013년 8월 14일)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Materion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는 본 정보 및 제품 또는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취급, 보관 및 폐기를 위한 안전 조건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부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정보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확신된다. 마테리온(Materion)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보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마테리온(Materion)은 이 정보와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조건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다. 사용자는 특정한 용도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모든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